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진흥 등 의무 신설〉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17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의무 규정에 생활체육을 추가	2
가. 관계 부처 의견	2
1) 농림축산식품부	2
2) 문화체육관광부	3
나. 검토의견	3
2. 농어촌 생활체육 시설 설치·운영 지원	7
가. 관계 부처 의견	7
1) 농림축산식품부	7
2) 문화체육관광부	7
나. 검토의견	8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5. 3. 21.
3.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하에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해 산업 육성, 정보화 촉진, 문화예술 진흥 분야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노력도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등에 관한 문제가 덜 중요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높아지고 있음.

특히 농어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요통, 관절염 등) 유병률이 일반 근로자보다 약 1.5~2배 높고(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고혈압 유병률,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도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높은 상황(농촌진흥청 조사, 2021~2022년)등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들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는 매우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자체의 농어업인들과 농어촌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과 노력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Ⅲ. 검토의견

1. 농어촌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의무 신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생활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생활체육축제를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진흥 및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농어촌의 <u>문화예술</u>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u>전통문화</u> 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u>향토문화축제</u> 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3조(----- <u>문화예술</u> 및 생활체육 ----) ① ----- ----- <u>전통문화</u> 및 생활체육을----- ----- <u>향토문화축제</u> 및 생활체육축제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u>문화예술</u> 활동을 진흥시키고, 보다 높은 <u>문화향수</u> 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에서 <u>문화예술</u> 공연· <u>전시</u>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 <u>문화예술</u> 및 생활체육 활동----- -----, ----- <u>문화향수</u> 및 생활체육----- ----- ----- <u>전시</u> 및 생활체육 ----- -----.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2) 문화체육관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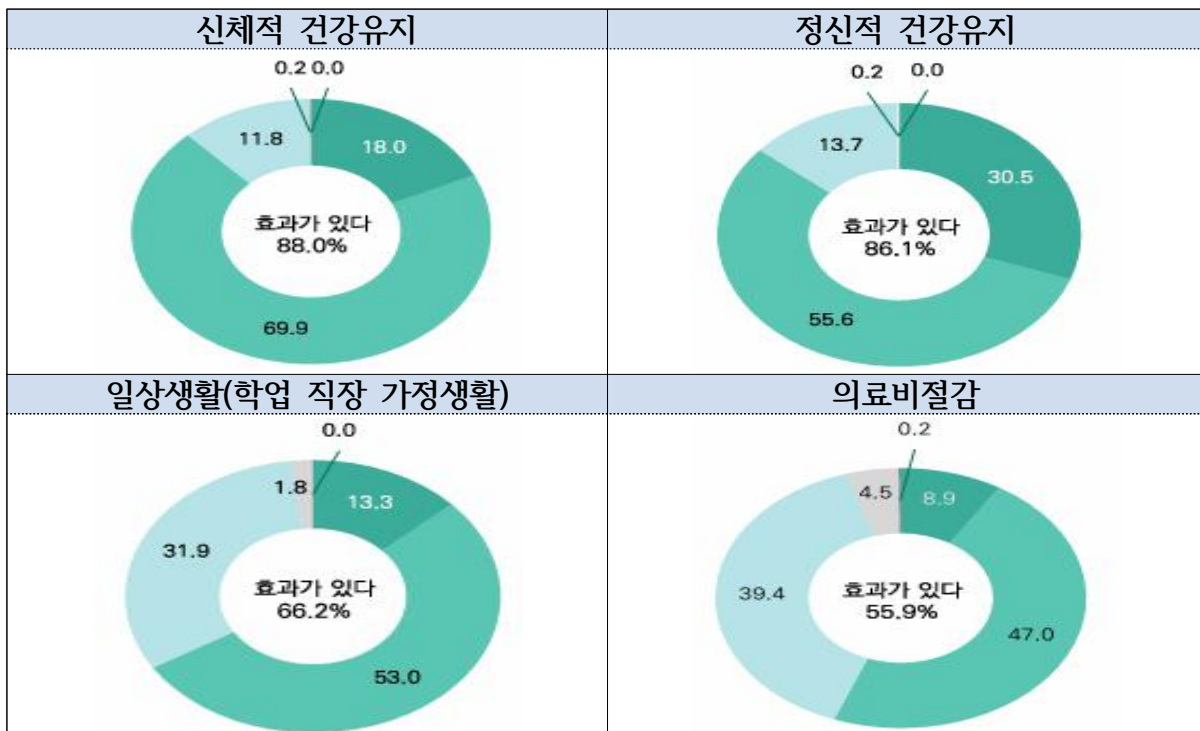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 없음.

나. 검토의견

‘생활체육’¹⁾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으로, 일상 속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함(「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

국민생활체육조사(2025.1.)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신체건강(참여자의 88% 긍정), 정신건강(86.1%), 일상생활(66.2%) 및 의료비 절감(55.9%)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음.

[체육활동이 미치는 효과(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 자료: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5.1.)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한편, 농어촌과 도시의 관절병 유병률²⁾은 면 15.3%, 읍 9.9%, 도시 8.1%이고, 고혈압 유병률은 면 41.5%, 읍 31.3%, 도시 26.3%로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이 도시에 비해 취약한 측면이 있음³⁾.

또한, 농업인의 67%가 근골격계질환⁴⁾ 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희망하지만, 운동 참여율은 18.7%에 불과하여⁵⁾ 농어촌 주민의 건강 및 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⁶⁾

현재 정부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교육·교통·주거·환경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참고자료2] 참고).

그러나, 인구 1,000명당 체육시설 수는 동은 1.5개, 읍은 1.46개, 면은 0.89개로, 농어촌(읍·면)이 도시(동)에 비해 적고, 특히 면 지역이 부족함에도, 정부의 농어촌 생활체육 관련 특화사업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읍, 면, 동 지역별 생활인프라 시설 분포 비교]

(인구 1,000명당 시설 수)

부문	읍	면	동	전국
의료	2.65	1.72	3.88	3.07
체육	1.46	0.89	1.5	1.29
여가·휴게	1.85	0.59	2.51	1.82

※ 「농촌 생활서비스 시설 분포와 인구감소지역의 비교분석」(국립농업과학원, 2022. 11.)을 재구성

2) ‘유병률’이란 일정 기간 조사대상자 중에서 새 환자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포함해 아팠던 사람의 비율임(「2020 통계용어」, 통계청).

3) 「농촌 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실태와 정책과제」(농촌경제연구원, 2023)

4) ‘근골격계 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함(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질환예방사업 소개).

5) 운동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는 (1) 시간 부족, (2) 관심 부족, (3) 체육시설 접근성 낮음으로 나타남(「2022년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농촌진흥청, 2023))

6) 어업인에 대한 관련 통계는 확인되지 않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에 특화된 생활체육활동을 진흥시키고 생활체육축제를 활성화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농어업인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개정안은 ① 농어촌의 건강수준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② 농어촌의 체육활동 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에서 국가 등에 대한 농어촌 생활체육 활성화 책무 도입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33조제1항은 생활체육을 계승·발전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은 ‘계승·발전’⁷⁾ 보다는 ‘보급·진흥’이 어법에 맞아 보임.⁸⁾

또한, 일관적인 법 체계를 위해 현행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와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에도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관련 조문: 법 제5조 및 제8조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

7) ○계승: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감

○발전: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감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8) 수정의견(안)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3조(-----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 ① ----- ----- 전통문화 및 생활체육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축제 및 생활체육축제를 -----	제33조(-----) ① ----- -----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생활체육을 보급·진흥시키기 위하여 -----
② (생략)	② (생략)	② (개정안과 같음)

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1. ~ 2의2. (생략)

3.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 11. (생략)

제8조(농어업인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①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농어촌의 교육·**문화예술** 여건

5. · 6. (생략)

2. 농어촌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현행법 제34조는 국가 등이 생활체육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조의 제명에 생활체육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평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 문화복지시설 및 <u>생활체육 시설</u> -----)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함.

2) 문화체육관광부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

나. 검토의견

국민생활체육조사(2025.1.)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인 읍·면의 경우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비하여 규칙적인 체육활동자의 감소폭이 큰 상황임.

[체육활동 변화 추이(규칙적 체육활동)]

(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단위: %, 점)

구분		매우 감소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매우 증가	긍정 합계	5점 평균
전체		0.2	16.3	66.0	17.1	0.4	17.5	3.01
도시 규모별	대도시	0.1	16.2	66.3	17.1	0.3	17.4	3.01
	중소도시	0.1	14.3	67.0	18.0	0.5	18.5	3.04
	읍면이하	0.2	20.4	63.4	15.5	0.4	16.0	2.96

※ 자료: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5.1.)

이에 대한 사유로는, 체육시설 접근성이 낮은 점을 지적한 비율이 대도시(29.0%), 중소도시(30.7%)에 비하여 읍·면의 경우(43.7%) 현저히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

(비규칙적 체육활동 참여자, 단위: %)

구분		체육 활동 가능 시간 부족	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체육 시설 접근성 낮음	체육 활동 지출 비용 부담	체육 활동 정보 부족	동반 참여자 부재	체육에 소질이 없음	건강 상의 문제	체육 프로그램 부족	소득 수준 낮음	건강과 체력에 자신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기타
전체		77.0	39.6	31.7	27.8	23.8	22.3	21.1	15.7	14.3	10.5	9.9	0.2
도시 규모별	대도시	82.3	42.0	29.0	25.9	20.5	16.9	22.8	15.7	17.9	12.8	10.7	0.0
	중소도시	69.7	35.4	30.7	28.5	27.4	29.8	23.4	17.0	10.8	7.7	8.1	0.6
	읍면이하	78.8	43.3	43.2	31.7	24.5	19.5	9.6	12.4	11.9	10.6	12.4	0.0

※ 자료: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5.1.)

개정안은 안 제34조의 제명에 ‘문화복지시설’과 구분하여 ‘생활체육시설’을 명시함으로써, 농어촌에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법 제34조 본문은 이미 문화복지시설을 생활체육 목적으로 설치·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새로운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며 생활체육시설을 강조하려는데 의의가 있어 보임.

다만, 현행법 제34조 본문에는 생활체육 목적으로 문화복지시설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제34조 제명에 문화복지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려면, 본문에도 문화복지시설·생활체육시설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임.⁹⁾

또한, 일관적인 법 체계를 위해 현행법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도 문화복지시설과 구분하여 생활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9) 수정의견(안)

*또한, 개정안은 제명에 “및”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점(·)으로 구분하고, 체계에 맞게 띄어쓰기를 자구 정리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안)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 문화복지시설 및 생활체육 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노인복지·문화예술공연·도서관·생활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 문화복지시설·생활체육시설-----) -) ----- ----- ----- ----- ----- 문화복지시설·생활체육시설----- ----- -

관련 조문: 법 제38조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문 의 처

02)6788-5417

참 고 자 료

참고1

농업인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 결과 (농촌진흥청)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조사('22년도 질병 조사 결과, 농촌진흥청)

- 전국 12,000개의 표본농가에 방문하여 농업활동으로 인한 질병 및 손상에 대해 농업인에게 직접 설문하여 조사한 것으로, 국가승인통계(제 143003호)에 해당

※ 본 통계 결과는 농업인 가구(개인)응답 조사로서, 전체 농가를 추정

○ 근골격계 예방 관련 운동프로그램 필요성 및 참여 여부

-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67.0%이나,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운동프로그램의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18.7%로 낮은 수준
- '운동 강사를 통해 직접 운동을 배워본 적'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23.1%
-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운동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사'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한 농업인은 57.7%였음

표 1.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	농업인수(명)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예	691,378	382,852	308,526	67.0	62.9	73.0
아니오	339,833	225,842	113,991	33.0	37.1	27.0
총계	1,031,211	608,694	422,517	100.0	100.0	100.0

표 2.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운동프로그램의 여부

단위 : 명, %

구분	농업인수(명)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예	192,941	88,553	104,389	18.7	14.5	24.7
아니오	838,270	520,141	318,128	81.3	85.5	75.3
총계	1,031,211	608,694	422,517	100.0	100.0	100.0

표 3. 운동 강사를 통해 배운 운동프로그램 경험

단위 : 명, %

구분	농업인수(명)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예	237,753	103,716	134,038	23.1	17.0	31.7
아니오	793,458	504,978	288,479	76.9	83.0	68.3
총계	1,031,211	608,694	422,517	100.0	100.0	100.0

표 4. 운동프로그램 무료 제공 시 참여 의사

단위 : 명, %

구분	농업인수(명)			비율(%)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매우 그러함	384,312	190,533	193,779	37.3	31.3	45.9
약간 그러함	210,067	119,204	90,863	20.4	19.6	21.5
별로 그렇지 않음	216,051	148,480	67,570	21.0	24.4	16.0
전혀 그렇지 않음	220,782	150,476	70,305	21.4	24.7	16.6
총계	1,031,211	608,694	422,517	100.0	100.0	100.0

참고2

2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 계획 과제 및 예산내역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25.4.21.)

(단위: 억원)

부문	과제명	소관부처	'24년 계획
	합계		145,804
	소계		41,684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복지부	3,830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복지부	1,920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_신규	복지부	383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_신규	복지부	160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복지부	240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소방청	34
	분만의료 도농간 격차 해소(분만취약지 해소)	복지부	243
	소아 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	복지부	28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어업안전보건센터운영)	해수부	4
	농촌형 보건의료지원_신규	농식품부	77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농식품부	76
	어업인 특수건강검진	해수부	17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을 통한 농어촌 정신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2,434
	취약농가 인력지원	농식품부	100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_신규	복지부	577
	지역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_신규	복지부	130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식품부	82.2
	농어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복지부	238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공동아이돌봄센터)	농식품부	20
	농어촌 영유아 돌봄 시설 확대 (농번기 아이돌봄방)	농식품부	29
	가족센터 건립 (지역자율계정)_신규	여가부	91
	공동육아나눔터_신규	여가부	247
	아이돌봄 지원사업_신규	여가부	7,243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복지부	171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복지부	444
	찾아가는 보육 서비스 제공	농식품부	20
	지역아동센터 지원_신규	복지부	5,246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1,991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식품부	1,493
	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해수부	130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확대	해수부	13.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식품부	1,91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개선	해수부	1,661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 관리기반 조성	농진청	21.6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실천 현장지원	농진청	48
	어업작업 안전 교육 및 예방장비 개발보급 지원	해수부	0.8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해수부	34
	민관 협업 수난구호를 통한 선진 바다 안전망 구축	해양경찰청	10
	소형어선 안전검사 단속 제도 활성화	해양경찰청	0.35
	농업인 노후안정 농지연금 지원	농식품부	2,423
	농업재해보험 사업 내실화	농식품부	7,309
	어업재해보험 품목 확대(양식어업재해보험 수지 개선)	해수부	241

부문	과제명	소관부처	'24년 계획
	경영이양 고령농업인 소득 지원	농식품부	305
	여성농업인 생애주기별 복지 환경 기반 조성	농진청	3.0
	소계		6,155
교육· 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 통학여건 개선	교육부	2,143
	농어촌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교육부	51
	농업인 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농식품부	99
	농수산업 후계 인력 장학금 지원	해수부	1.32
	학교 시설 안전 강화	교육부	69
	농어촌 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학교 운영 지원	교육부	90
	농어촌 학교 진로교육 강화	교육부	8
	농어촌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교육부	67
	농어촌 지역 평생교육 기반 확충	교육부	1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17
	농촌지역 양성평등 교육확대	농식품부	1
	문화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_신규	문체부	80
	문화누리카드로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제공	문체부	3,403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문체부	4.80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	문체부	0.81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구석구석 문화배달)	문체부	61.5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문체부	11
	지방문화원 원천콘텐츠 발굴 지원	문체부	17
	농경문화자원 활용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농진청	21
	소계		88,346
농어촌 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 기반 구축	농촌형 교통모델 다변화	농식품부	498
	농어촌 지역 교통여건 확충(공공형 택시)	국토부	139
	주민참여형 교통모델 확산	국토부	582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해수부	289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국토부	2.9
	연안여객선 현대화	해수부	541
	스마트 해상교통망 구축 운영	해수부	31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해양경찰청	264
	취약계층 주거여건 개선(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식품부	2,800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 추진	농식품부	38
	농어촌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처리 지원	환경부	1,569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국토부	33,824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국토부	57
	농어촌지역 기초생활인프라 개선(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농식품부	1,500
	농어촌지역 하수도 설치	환경부	10,111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산업부	194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산업부	108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해수부	27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_신규	행안부	151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_신규	산업부	556
	거점과 배후마을 간 상호 기능 연계 강화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농식품부	6,443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농식품부	841

부문	과제명	소관부처	'24년 계획
	어촌뉴딜 300	해수부	2,348
	정주환경 및 농촌생활서비스 모니터링 기술 개발	농진청	1.4
	어촌신활력 증진_신규	해수부	1,428
	수리시설 안전관리 (1)	농식품부	7,462
	수리시설 안전관리 (2)	농식품부	85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대책	농식품부	4,535
	어항시설 안전관리(어항시설보강)	해수부	3,063
	산불 예방·방지 대책	산림청	1,390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강화	산림청	179
	산림보호 지원	산림청	14.6
	청년 보금자리 조성	농식품부	304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국토부	377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과기정통부	1,386
	농어촌 폐기물 수거·처리 개선	환경부	67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1) (해양쓰레기 정화)	해수부	44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개선(2) (연안어장 환경개선)	해수부	155.0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해양경찰청	2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확충 (영농폐기물재활용촉진)_신규	환경부	126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_신규	환경부	200
	축산·경종 분야 암모니아 관리 강화	농식품부	388
	지역단위 농업농촌 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확산	농식품부	95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해수부	168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해수부	291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1)	환경부	743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2)	농식품부	358
	농업기반시설활용 에너지개발	농식품부	77
	친환경 양식 에너지 보급	해수부	309
	목재펠릿 사용 확대	산림청	26
	해역별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및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해양경찰청	4
	농촌공간계획을 활용한 난개발 방지	농식품부	1,360
	경관보전 직불제	농식품부	32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해수부	48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1)	농식품부	13
	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2)	해수부	5
	농업·농촌 공익자원 관리 및 활용 기술 개발	농진청	0.4
경제 활동 다각 화와 지역 순환 경제 구축	소계		9,619
	농촌융복합산업활성화(융복합산업 창업지원 강화)	농식품부	132
	푸드플랜 내실화(1)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농식품부	111
	푸드플랜 내실화(2) (농산물직거래활성화)	농식품부	55
	푸드플랜 연계 가공 기초기반 조성 지원	농진청	70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1)	해수부	9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2)	해수부	9
	꾸러미사업 지원_신규	농식품부	2
	농촌관광활성화	농식품부	157
	어촌관광활성화	해수부	34

부문	과제명	소관부처	'24년 계획
	해양관광활성화	해수부	749
	농촌관광 수요확대를 위한 포용적 디자인 기술 확산	농진청	0.6
	음식관광활성화(음식관광상품 개발 보급)	농식품부	3.9
	음식관광활성화(찾아가는 양조장)	농식품부	9.6
	관계인구 형성지원(농촌형 위케이션)_신규	농식품부	2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_신규	환경부	220
	지역관광 다양성(섬 관광 활성화)_신규	문체부	102
	영농승계 다변화를 통한 청년농업인 양성	농식품부	1,325
	청년어업인 후계영어자금	해수부	101
	유희시설 활용 창업지원	농식품부	58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_신규	농식품부	5
	귀농 귀촌인 창업, 주거 지원	농식품부	19
	귀어귀촌활성화(민관 거버넌스 구축, 청년어업인 양성)	해수부	64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브랜드 창출_신규	중기부	88
	스마트팜 보급 확산 및 전문가 양성	농식품부	2,155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농진청	20
	스마트양식장 클러스터 조성	해수부	280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산림청	137
	농식품 벤처 지원 (인턴제 개편 및 액셀러레이터 발굴)	농식품부	472
	농식품펀드 민간투자 활성화	농식품부	550
	수산업 창업투자 지원추진	해수부	298
	산림 휴양-치유공간 조성	산림청	768
	산림일자리발전소 운영 및 확대	산림청	24
	말산업 육성	농식품부	179
	산촌활력 특화_신규	산림청	8
	국유림 활용 산촌 활성화_신규	산림청	9
	미래 산림인 육성 지원_신규	산림청	6
	농어촌 거주 여성 경제활동 지원	여가부	1,075
	다문화여성 역량강화	농식품부	7
	농촌 고용인력 지원	농식품부	221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해수부	5.4
	외국인 노동자 적정배정 및 처우개선	고용부	79

* 투융자 금액은 국비, 지방비, 민간 등 기타금액을 합산한 총액임